

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

보육교직원 자격기준

2014년 3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



주요 변경사항

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및 사전직무교육 신설

일반	보육교사 1급 + 3년 경력 유치원 정교사 1급 + 3년 경력
가정	보육교사 1급 + 1년 경력
장애아전담	일반자격 +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 → 삭제

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?

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**사전직무교육(80시간)**을 이수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사전직무교육은 원장 자격 취득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※ 2014. 3.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
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

보육교사 2급	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(17과목 51학점)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+ 2년 경력 + 승급교육(80시간)
---------	---

보육실습 기준 강화 2013년 3월 1일 시행

실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
실습지도교사	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
실습시간	4주 160시간, 평일(월 ~ 금요일) 오전 9시 ~ 오후 7시

2014년 3월 1일 이후 현행 기준 해당자의 자격증 발급

- 2014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2014년 2월 28일까지 '보육인력국가자격증' (chrd.childcare.go.kr)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증의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 (추후 서류제출 필수)
- ※ 단, 현행 기준에 의한 대학 졸업자 및 학위 취득자는 제외



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'보육인력국가자격증' (chrd.childcare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